

고 시

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120호

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(전북장수 지역수요맞춤형)

『공공주택 특별법』 제35조 제1항에 따라 전북장수 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(지역수요맞춤형)을 변경 승인하고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』 제32조 및 『토지이용 규제기본법』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03월 06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- 1. 사 업 명 : 전북장수 1BL 지역수요맞춤형 공공주택건설사업(국민임대)
- 2. 사업시행자

구 분	기 정	변 경	비 고
가.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	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흡	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	
나. 주소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좌동	

3. 사업개요

구 분	기 정	변 경	비 고
가. 대지위치	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430-3번지	좌 동	
나. 사업면적(m ²)	7,097.00	7,072.00	감 25.00
다. 대지면적(m ²)	7,097.00	7,072.00	감 25.00
라. 연 면 적(m ²)	8,403.59	8,609.27	증 205.68
마. 사업규모	아파트 2개동 (국민임대 120호, 9층 이하) 및 부대·복리시설	좌 동	
바. 구 조	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	좌 동	

4. 사 업 비

- (기정) : 19,242,958천원 (주택도시기금 6,307,360천원)
- (변경) : 30,163,625천원 (주택도시기금 7,285,080천원)

5. 사업기간

- (기정) : 사업승인 고시일 ~ 2022.12.
- (변경) : 사업승인 고시일 ~ 2025. 02.

6.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(변경없음)

가.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에 관한 사항 : [붙임1](도면생략)

나.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: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<http://luris.molit.go.kr>)에서 열람할 수 있음

7. 기 타: 관계 도서는 장수군청 민원과, 전북도청 지역경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(063-230-6273)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함.

[붙임1]

■ 지형도면 고시 내용

전북장수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사항

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면적,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, 주소

□ 소재지 :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리 430-3번지 일원

연번	구분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㎡)		소유자			관계인			비고
					공부상	편입	주 소	지분	성 명	권리 부분	주 소	성명	
1	-	장수리	430-3	답	2,245	2,245	장수군 장수읍 257	1/1	김정희				
2	-	장수리	430-4	답	1,238	1,238	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62	1/1	최순예	근저당권/ 지상권	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	농협은행 주식회사	
3	-	장수리	430-5	답	1,109	1,109	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260, 가동 305호	1/1	김광철				
4	-	장수리	430-12	답	339	339	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28	1/1	박정금	근저당권/ 지상권	전북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73	무진장축 산업협동 조합	
5	기 정	장수리	431-2	답	1,127	1,127	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28	1/1	정원상	근저당권/ 지상권	전북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73	무진장축 산업협동 조합	
	1,113				1,113								
6	-	장수리	432-2	답	911	911	장수군 장수읍 준비취락길 13-10	1/1	최용남	근저당권	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	농협은행 주식회사	
7	기 정	장수리	432-7	답	128	128	장수군 장수읍 준비취락길 13-10	1/1	최용남				
	117				117								
계	기 정	7필지			7,097	7,097							
	변 경				7,072	7,072							

②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관한 사항

1.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- “변경 없음”

가. 용도지역 결정 조서 - “변경 없음”

구 분		면 적(m ²)			구성비 (%)	비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합 계		533,646,225	-	533,646,225	100.00	
도 시 지 역		5,474,447	-	5,474,447	1.03	
주거지역	소 계	1,236,788	-	1,236,788	0.24	
	제1종일반주거지역	1,055,915	-	1,055,915	0.20	
	제2종일반주거지역	99,083	-	99,083	0.02	
	준주거지역	81,790	-	81,790	0.02	
상업지역	소 계	183,151	-	183,151	0.03	
	일반상업지역	183,151	-	183,151	0.03	
공업지역	소 계	81,669	-	81,669	0.02	
	준공업지역	81,669	-	81,669	0.02	
녹지지역	소 계	3,972,839	-	3,972,839	0.74	
	보전녹지지역	228,308	-	228,308	0.04	
	생산녹지지역	752,460	-	752,460	0.14	
	자연녹지지역	2,992,071	-	2,992,071	0.56	
도 시 외 지 역		528,171,778	-	528,171,778	98.97	
관리지역	소 계	173,319,261	-	173,319,261	32.47	
	보전관리지역	67,667,153	-	67,667,153	12.68	
	생산관리지역	62,048,421	-	62,048,421	11.62	
	계획관리지역	43,603,687	-	43,603,687	8.17	
	농림지역	337,736,515	-	337,736,515	63.29	
자연환경보전지역		17,116,002	-	17,116,002	3.21	

③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에 관한 사항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구역명	위 치	면 적(m ²)			비고
		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
변경	①	장수 공공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	장수읍 장수리 430-3번지 일원	7,097	감) 25	7,072	

나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(m ²)	변경사유
변경	①	장수 공공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	장수읍 장수리 430-3번지 일원	7,072	장수 공공주택건설 사업구역 내 일부 도로 편입에 따라 면적 변경

2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도 : 게재생략

3.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: 해당없음

나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구 번호	면적(m ²)			획 지		비고
	기정	변경	변경후	획지번호	위 치	
1BL	7,097	감)25	7,072	①	장수군 장수리 430-3번지 일원	공동주택 및 부대·복리시설

※ 공동주택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조성후 별도의 획지로 분할 할 수 있음

다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- “변경 없음”

가구번호	획지번호	위 치	구 분		계 획 내 용
1BL	①	장수군 장수리 430-3 번지 일원	용도	지정 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「주택법」 제2조 제13호 및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4장에 의한 부대시설 「주택법」 제2조 제14호 및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장에 의한 복리시설
				불허 용도	•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
			건폐율	• 30% 이하	
			용적률	• 150% 이하	
			높이	• 9층 이하	

라.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: 해당없음

4.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

가. 용도지역·지구의 세분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도 : 게재생략

나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도 : 해당없음

다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(변경)도 : 게재생략

라.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(변경)도 : 게재생략